파 주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시 보

제1715호

2019년 5월 23일 (목)

차 례

입법예고

○ 파주시 공고 제2019-875호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····· 1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파 주 시

파주시 공고 제2019 - 875호

「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·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제2조 규정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23일

파 주 시 장

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○ 남·녀 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를 보강하여 경기력 향상을 통한 우수한 성적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 중 주무 1명을 추가 영입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**주무 1명 추가 영입**

- 기존 코치 1명, 주무 1명 외에 **주무 1명 추가 영입**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개정안 전문은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의 입법예고란에 게시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19년 6월 12일 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팩스, 전자메일

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전화번호, 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체육과 체육진흥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1, 파주시청(별관) 3층 체육과

○ 전화 : 031-940-4832 /FAX : 031-940-4839 /전자메일(bakkun@korea.kr)

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※ 단체의 경우 대표자 성명도 기재